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고,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당초 :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
- 변경 :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나.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 신설(안 제2조)

- 기금의 존속기한 : 2021년 12월 31일까지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”을 “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”으로, “지방채무상환기금”을 “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기금의 조성)”을 “(기금의 조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채상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”를 “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일정율”을 “일정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시의”를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”로, “지방채 원리금”을 “지방채 원리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목적외”를 “목적 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관리·운용하기위하여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”을 “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후”를 “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”을 “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

「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 조례	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구미시에 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---- ----- ----- -----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지방채상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. 2. (생략)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2조(기금의 조성 등) ①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---- 각 호----- 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----- 일정률----- ----- -----.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 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시
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
방채원리금 상황에 사용한다.
다만,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
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
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황을
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
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황
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
자방식에 의한다.

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
없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
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
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
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
다.

② (생략)

제5조(기금관리·운용의 심의) ①
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
하기위하여 구미시지방채상환
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
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구
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--
지방채 원리금 -----.
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③ ----- 목적 외-----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

----- 따라 -----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금관리·운용의 심의) ①
----- 관리·운용
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채상환
기금 -----
-----.

② ----- 필
요-----

정한다.

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,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-----.

③ ----- 각 호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-----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-----
-----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해당연도 -----

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<u>각호</u> 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	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 <u>각 호</u>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<u>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u>	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<u>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재무회계 규칙」</u> -----.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9조(시행규칙) ----- -- <u>필요</u>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~ ④ 생략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김 용 학
	담 당	박 정 은
	담 당 자	송 홍 경 (480-6516)